

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[] 수리 [] 개선 명령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수요자	상호
	대표자
	소재지

위반내용

수리 또는 개선 명령의 내용

이행일

귀하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4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같은 규칙 별표 20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맞지 않으므로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[]수리 []개선을 명령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유의사항

-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나 개선을 끝낸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수리나 개선 명령을 이행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.
-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이 중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리나 개선 여부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공급이 재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